

第108回(臨時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本會議會議錄

第2號(附錄)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目 次

1.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定例會議運營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1面
2. 서울特別市鐘路區體育施設管理·運營및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5面
3. 서울特別市鐘路區生活體育教室等의設置運營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9面
4. 서울特別市鐘路區家畜飼育制限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13面
5. 서울特別市鐘路區再活用品販賣代金管理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16面
6. 서울特別市鐘路區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19面
7. 서울特別市鐘路區稅減免條例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23面
8. 서울特別市鐘路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29面
9. 서울特別市鐘路區住宅改良再開發事業施行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32面
10. 서울特別市鐘路區地下水條例(案) 審査報告書	36面
11. 서울特別市都市計劃條例改正建議要求(案)(安載弘議員 外 5人 發議)	41面

1.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審査報告書

2001. 2. 8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1. 審査經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년 1월 29일 · 홍기서 의원 외 4인

나. 회부일자 : 2001년 1월 29일

다. 상정일자 : 제108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2001. 2. 6) 운영위원회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홍 기 서 의원)

가.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사무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종전에는 반드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0. 7. 1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6879호)으로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중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선택하여 조례로 명시한 후 실시토록 자율성이 부여됨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그 실시 시기를 조정하고자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정례회의 집회일자 조정 (제4조)

- ┌ 제1차 정례회 : 매년 6월 20일 ⇒ 매년 7월 1일로 변경
- └ 제2차 정례회 : 매년 12월 1일 ⇒ 매년 11월 25일로 변경

-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를 7월·8월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9월·10월로 변경

○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토록 조정 (제5조)

다.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6879호, 2000. 7. 1) - 제16조 및 제19조의4 개정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장 소 수)

가. 개정 이유

○ 행정사무감사를 종전에는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에 실시토록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0년 7월 1일자로 동시행령이 개정되면서 1차, 2차 정례회의 기간 중 임의로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예산심사와의 연계 필요성 등을 고려, 2차 정례회의에 실시하도록 개정코자 함

나. 주요 내용

- 1차, 2차 정례회의 심의안건 조정
- 1차, 2차 정례회의 집회일자 변경

차수별	집 회 일 자		심 의 안 건	
	현 행	개 정	현 행	개 정
1차 정례회	6월 20일 (총선거시 7,8월중)	7월 1일 (총선거시 9,10월중)	결산안 승인, 행정사무 감사, 구정질의	결산안 승인, 구정질의
2차 정례회	12월 1일	11월 25일	예산안 의결, 구정질의	예산안 의결, 구정질의, 행정사무감사

다. 개정 필요성 검토

심의안건 개정요인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4 개정 >

①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월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 12월중에 집회하여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의 제1차 정례회는 9, 10월중에(중전 7,8월중) 집회할 수 있다.

1. 제1차 정례회는 결산승인 및 기타 지방의회 부의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예산안 의결 및 기타 지방의회 부의안건

집회일자 개정요인

< 제1차 정례회의 > 매년 6월 20일 → 매년 7월 1일

- 결산검사서 의회 회부일정 감안
 - 12월 31일 년도폐쇄
 - 2월 28일 출납폐쇄기한
 - 5월 19일 구, 결산서 작성 완료(출납폐쇄 후 80일) : 지방재정법 제125조
 - 6월 24일 의회, 결산검사(결산검사기간 35일)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제3항
 - 6월 30일 의회, 결산검사승인 요청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 후기 원구성 일정 감안
 - 상임위원장 임기 7월 10일 만료 : 종로구의회의위원회조례 제10조 임기만료 전 구성 의무

< 제2차 정례회 일정 조정 > 매년 12월 1일 → 매년 11월 25일

- 중전 행정사무감사 기간(7일)만큼 순연
- 예산안 제출일정 감안 : 회계년도 개시 40일전(11월 20일 접수)

라. 검토의견

- 행정사무감사를 연말 2차 정례회의에 변경하는 것은 예산심의와 연계할 경우 서로 상승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 1차 회기의 조정은 결산 법정소요일수에 근거한 것이며, 2차 회의 회기조정은 연말(12월 25일 이후) 일정을 감안한 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質疑 및 答辯 要旨 :

(질의자 : 이 동 규 위원)

(답변자 : 홍 기 서 위원)

문) 2차 회의 회기조정을 연말 12월 25일 이후의 일정을 감안하여 조정하였다고 했는데, 구청의 일정도 고려한 사항입니까? 지난해를 보면 그 시기에 구청에서는 체련대회 등의 행사가 있어 직원들이 자리를 많이 비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 그것은 조례로 회기가 정해지면 의회 일정에 맞추어 집행부에서 조정을 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 봅니다.

5. 討 論 要 旨 : 없 음

6. 審 查 結 果 : 원안가결

7. 少數意見의 要旨 : 없 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2. 서울특별시종로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審 査 報 告 書

2001. 2. 8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 査 經 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년 1월 22일 ·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1년 1월 29일
- 다. 상정일자 : 제108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2001. 2. 6) 시민행정위원회 상정·의결

2. 提 案 說 明 의 要 旨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김 현 식)

가. 개정이유

○종로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도록 통보된 조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보다 발전된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구민이 주인인 구민을 위한 체육시설이 되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사용허가 (안 제4조제3항)
 -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개인이나 단체에서 2일 이상 계속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시설개방의 제한 조항 삭제 (안 제7조)
- 사용시간 조항 삭제 (안 제8조)
- 사용자의 부대설비 (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를 하며, 설치한 설비의 철거비용도 사용자가 부담한다.
- 사용료의 반환 (안 제12조제1호)
 - 사용자가 이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사용료의 70%를 반환

다. 개정근거

- 종로구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000. 9.28)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강 광 일)

가. 개정 이유

- 체육시설 관리·운영과 관련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조례의 일부 규정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개정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 골자

- 체육시설을 개인이나 단체에서 2일 이상 계속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3항)
- 시설 개방의 제한규정 삭제(안 제7조)
-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조항 삭제(안 제8조)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할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정을 삭제(안 제9조)
- 사용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사용료의 1/2을 반환토록 하던 것을 70%로 상향 조정(안 제12조제1호)

다. 국무조정실 권고내용

관 련 조 항	권 고 내 용	사 유
제4조(사용허가) ③구청장은 체육시설의 계속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인이나 단체에서 2일이 상 계속사용을 제한함」으 로 개선	계속사용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규정
제7조(시설개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 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개방 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없이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제13조 각호의 1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경기대회 행사 · 체육진흥을 위하여 종로구 테니스연합회가 주관하는 경기대회 및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폐 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며, 규제 수준이 비현실적임

관 련 조 항	권 고 내 용	사 유
제8조(사용시간)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하절기(4월~10월):상오6시부터 하오9시까지 동절기(11월~3월):상오7시부터 하오9시까지	폐 지	「이용자 준수사항」에 명시하고 폐지
제9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설비를 한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 회복하여야 함」으로 개선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사용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사용료를 ½ 반환	70%로 개선	

라. 체육시설 현황

시 설 명	규 격(m)	면 수	면 적(m ²)
삼청테니스장	10.97×23.77	6	5,280

마. 2000년 삼청테니스장 관리현황

○ 이용 현황

- 클럽 수 : 12개 동호인 클럽
- 회원 수 : 250명
- 1일 이용인원 : 53명(개인 레슨자 포함)
- 연 인 원 : 19,574명

○ 수익 현황

수 입	지 출	수 익	비 고
101,553,000원	99,051,771원	2,501,229원	

*지출내역 : 인건비(정규직 3명, 강사 2명), 소모품비, 시설수선비 등

바. 검토의견

- 체육시설 사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조례 제7조 시설개방의 제한규정 중 제2호 시설의 개보수와 제3호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부득이 사용제한 조치가 불가피하고

○이때 개방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는 것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제7조 전체의 삭제가 타당한 것인지 이에 대한 검토

4. 質疑 및 答辯 要旨 :

(질의자 : 홍기서 위원, 천상욱 위원, 최강순 위원, 현수한 위원, 선상선 위원)

(답변자 : 행정관리국장 김현식)

문) 제8조의 사용시간 조항을 삭제하면 무절제한 야간경기와 이로 인한 조명등 사용으로 인근 주민에게는 오히려 심한 불편을 주는 사항이 아닙니까?

답) 이번 개정사항들은 모두 정부에서 불합리한 규제 폐지요구에 의해 우리 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삼청테니스장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3면 이상 사용 시에만 조명을 켤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행정지도를 통해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문) 제8조의 사용시간 조항을 삭제하면 시간연장에 따른 야간경기로 인한 전력사용과 직원대기로 인한 인건비 등에 의해 비용이 많아져 수익이 그만큼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까?

답) 시간연장에 따른 추가지출은 없습니다. 이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히려 수익이 증가하리라 봅니다.

문) 제7조 시설의 개보수나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주민에게 고지토록 되어 있는 항목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이는 당연히 고지해야 하는 사항 아닙니까?

답)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불특정 다수인에게까지 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5. 討 論 要 旨 : 없 음

6. 審 査 結 果 : 원안가결

7. 少數意見의 要旨 : 없 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3. 서울특별시종로구생활체육교실등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審 査 報 告 書

2001. 2. 8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 査 經 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년 1월 22일 ·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1년 1월 29일
- 다. 상정일자 : 제108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2001. 2. 6) 시민행정위원회 상정·의결

2. 提 案 說 明 의 要 旨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김 현 식)

가.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정비해야 될 부문과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여 구민에게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명칭 개정 (안 제3조)
 - 종로구 생활체육·취미교실 및 문화센터라 한다.
- 교육과정 (안 제7조)
 - 교육과정은 초급과정과 중·고급과정을 둘 수 있으며, 교육기간은 연중 운영한다.
- 강사의 위촉 (안 제8조제1항)
 - 강사는 해당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 수강료 (안 제9조)
 - 구 청사 및 정규 체육시설은 월8회 이하 5,000원, 월8회 초과시 10,000원으로 한다.

다. 개정근거

-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정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강 광 일)

가. 개정 이유

- 종로구주민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 중복된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 골자

- 명칭 중 동에서 주관하는 교실을 삭제하고 종로구 생활체육·취미교실 및 문화센터로 함(안 제3조)
- 교육기간은 과정별로 4월 이내로 하던 것을 연중 운영토록 함(안 제7조 후단)
- 강사는 해당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함(안 제8조제1항)
- 수강료 중 주민자치센터와 동청사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구청사 및 정규 체육시설에 대하여 월 8회 이하 5,000원, 월 8회 초과시 1만원으로 함(별표2)

다.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p>제3조(명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에서 주관하는 교실 ⇒ 종로구 생활체육·취미교실 및 문화센터 ○ 동에서 주관하는 교실 ⇒ 종로구 ○○동 생활체육·취미교실 	<p>제3조(명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실 ⇒ 종로구 생활체육·취미교실 및 문화센터
<p>제7조(교육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간 ⇒ 과정별로 4월 이내로 하되 교육여건에 따라 구청장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p>제7조(교육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간 ⇒ 연중 운영토록 함
<p>제8조(강사의 위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실의 강사는 해당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p>제8조(강사의 위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실의 강사는 해당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p>[별표2] 수강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월 수강료 ○ 주민자치센터, 정규체육시설, 동청사 등 월 2회 : 5,000원 월 4회 : 10,000원 월 8회 : 15,000원 월 12회 : 20,000원 월 16회 이상 : 25,000원 	<p>[별표2] 수강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월 수강료 ○ 구청사 및 정규체육시설 등 월 8회 이하 : 5,000원 월 8회 초과시 : 10,000원

라. 2000년 생활체육·취미교실 운영실적

운영주체	운영교실	운영실적		강사료	비고
		회수	인원(명)		
구 지역	8개 교실	35	2,150	13,750,000	단전호흡, 건강체조, 볼링, 수영, 테니스, 탁구, 농구, 축구
동	43개 교실	554	28,694	68,763,000	수강료 징수 11,735천원

마. 2001년 생활체육·취미교실 운영계획

종 목	장 소	일 시	대 상
건강체조	송인, 삼청, 사직,종묘공원	주 3회	구민 누구나
단전호흡	구청 강당	“	구민 누구나
볼 링	비원볼링장	“	구민 30명
주부수영	은석수영장	“	주부 30명
테 니 스	삼청테니스장	“	구민 30명
게이트볼	사직공원, 낙산철거부지	주 2회	구민 30명
배드민턴	송인공원, 무악배드민턴장	주 4회	구민 30명
배 구	구청 체육관	주 2회	구민 30명

바. 검토의견

○ 2000년 11월 6일 종로구 주민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 공포되어 동에서 실시하는 생활체육·취미교실은 주민문화복지센터에서 수행토록 하고 수강료 등은 1인 월 1만원 이하로 하도록 별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 규정된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質疑 및 答辯 要旨 :

(질의자 : 흥 기 서 위원)

(답변자 : 행정관리국장 김 현 식)

문) 단전호흡, 볼링 등도 회비를 받습니까?

답) 생활체육에 있어 야외인 경우는 무료이며, 시설 이용인 경우에만 비용을 받습니다.

문) 2001년도 생활체육·취미교실 운영계획을 보면, 주부수영 장소로 사설수영장인 은석수영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사설수영장에 강사까지 배치해 가며 하지 말고 구민회관이나 구민생활관에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답) 구민회관이나 구민생활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 프로그램에 의해 이미 수영강좌를 하고 있어 이용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유가 생긴다면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5. 討 論 要 旨 : 없 음

6. 審 査 結 果 : 원안가결

7. 少數意見의 要旨 : 없 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4. 서울특별시종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審 查 報 告 書

2001. 2. 8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 查 經 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년 1월 22일 ·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1년 1월 29일
- 다. 상정일자 : 제108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2001. 2. 6) 시민행정위원회 상정 · 의결

2. 提 案 說 明 의 要 旨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이 병 만)

가. 개정이유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종로구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주민의 편의을 도모코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적용이 불가하여 일부조항을 삭제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허가증 게시의무 삭제 (안 제4조제3항)
 - 허가증 게시의무를 삭제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
- 주민의 보건위생에 대한 보호 (안 제6조제1항)
 - 가축사육에 대한 감독시 인근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생활환경의 보전 및 보건향상 기여

다. 개정근거

-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법정주의), 제5조(규제의 원칙)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모델 적용지침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강 광 일)

가. 개정 이유

- 가축사육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증을 축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하던 것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를 폐지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임

나. 주요 골자

- 가축허가증 게시의무를 삭제(안 제4조제3항)
- 가축사육에 대한 감독시 인근 주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함(안 제6조제1항)

다. 사육제한 가축의 종류(조례 제2조)

- 축산법 제2조 및 축산법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가축
 - 소, 말, 산양, 면양, 돼지, 닭
 - 노새, 당나귀, 토끼, 개, 사슴
 -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꿀벌
 - 기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짐승, 가금 및 관상용 조류
- 다만, 애완 또는 방법용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지 않는 개와 관상 및 애완 가금류 등은 제외

라. 우리 구 가축사육 허가현황

- 없음

마. 검토의견

- 행정규제 개혁을 총괄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의 권고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부칙 제2조 경과규정은 종전 서울시조례로 규정하던 것을 1988년 5월 1일 자치구조례로 이관 시에 필요했던 규정으로 현행 조례 개정 시에는 전혀 불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됨

바. 관련법규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그 지역 안에서는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4. 質疑 및 答辯 要旨 :

(질의자 : 선 상 선 위원)

(답변자 : 생활복지국장 이 병 만)

문) 부칙②는 '88년에 서울시조례로 규정하던 것을 자치구조례로 바꾸면서 둔 경과규정이요, 또한 그 이전에도 우리 구에서는 가축사육에 대한 허가 등이 없었으므로 전혀 불필요한 조항이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 부칙②는 일반적으로 조례가 개정될 때마다 두는 경과규정의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88년 이전에 우리 구에서는 허가가 없었기에 의미는 없을 지 모르나, 만일을 대비해 조항을 그냥 두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5. 討 論 要 旨 : 없 음

6. 審 査 結 果 : 원안가결

7. 少數意見의 要旨 : 없 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5. 서울특별시종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審 查 報 告 書

2001. 2. 8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查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년 1월 22일 ·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1년 1월 29일
- 다. 상정일자 : 제108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2001. 2. 6) 시민행정위원회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이 병 만)

가. 개정이유

- '98. 10. 12 서울시와 서울시청노동조합간의 '98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에 맞게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재활용품판매대금은 재활용품을 수집·선별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한 노·사 합의사항에 맞게 관련조항 삭제

다. 개정근거

- 폐관67510-1310('98. 10. 19) '98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통보
- '98 서울특별시청노·사협의회('98. 10. 12) 합의서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강 광 일)

가. 개정 이유

- 재활용품 판매대금 중 50% 범위 내에서 재활용품을 수집·선별하는 환경미화원에게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으로 지급하던 것을
- 서울시와 서울시청 노동조합간의 노사합의에서 '98년 11월 1일부터 이를 폐지키로 함에 따라 조례의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 골자

- 기금의 용도 중 환경미화원에 대한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을 삭제(안 제3조제2호)
-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은 판매대금의 50% 이내로 하도록 하는 규정 삭제(안 제6조제2항 단서)

다. 기금의 용도(조례 제3조)

-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
- 재활용품 수집·선별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재활용품 판매대금 년도별 수입·지출 현황

(단위:천원)

년도별	수 입			지출액	이월액
	계	판매대금	이자수입		
1995년	152,995	152,797	198	100,835	52,160
1996년	107,889	102,509	5,380	74,216	85,833
1997년	113,695	107,649	6,046	101,013	98,515
1998년	106,171	99,565	6,606	89,733	114,954
1999년	62,816	56,294	6,522	56,007	121,763
2000년	69,437	59,251	10,186	30,740	160,460

마. '98년 노사합의 사항('98.10.12)

-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재활용품을 수집·선별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98. 11. 1부터 시행한다.

바. 검토의견

- 노사합의에 따라 '98년 11월 1일부터 환경미화원에 대한 장려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조례의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제도 시행 이후인 '99년부터는 판매대금이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감소되었는 바 이는 환경미화원의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어졌기 때문으로 판단됨

4. 質 疑 및 答 辯 要 旨 :

(질의자 : 홍 기 서 위원)

(답변자 : 생활복지국장 이 병 만)

문) 노·사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이라 하여 무조건 없애지는 말고, 환경미화원의 복지나 시설분야 등의 다른 용도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답)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 討 論 要 旨 : 없 음

6. 審 査 結 果 : 원안 가결

7. 少 數 意 見 의 要 旨 : 없 음

8. 其 他 必 要 한 事 項 : 없 음

6. 서울특별시종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審 査 報 告 書

2001. 2. 8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1. 審査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년 1월 22일 ·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1년 1월 29일
- 다. 상정일자 : 제108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2001. 2. 6) 재무건설위원회 상정 ·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동 연 호)

가.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보유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재물조사 지침에 따라 매2년마다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는 바, 2000 지방자치단체 정기 재물조사결과 개선대책으로 불용품의 신속한 처분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 및 매각가격 감정대상을 조정토록 하는 행정자치부의 「2000년 정기재물조사결과 개선대책」이 서울시를 통하여 통보됨에 따라 우리 구 물품관리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 조정(안 제15조제3항)
 - 서울시와 소속 사업소,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에 행하는 소요조회 기준을 현행 장부상 취득가격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인 물품”을 “단가 2,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확대 조정함
 - ※ 현행 1,000만원 이상 물품은 중앙행정기관, 광역시, 도에 대하여도 소요조회함
- 불용품의 감정가액 기준 조정(안 제16조제4항)
 - 감정대상을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물품”에서 “2,0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상향조정

다. 개정근거

- 지방재정법 제103조 및 동법시행령 제126조
- 2000 정기재물조사결과 개선대책 시달(서울시 회계43500-3433, 2000.8.23)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장 소 수)

가. 개정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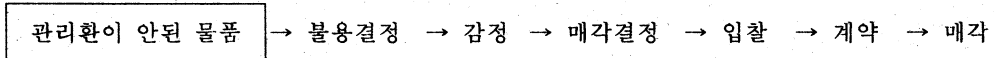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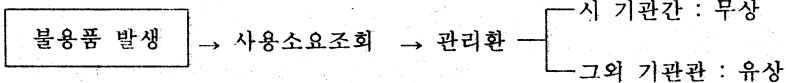
- 2000년 재물조사 결과 전산장비 등 신형모델은 개발속도가 빨라 내구년한을 초과하지 않은 물품일 지라도 구형화로 불용품화 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런 물품에 대하여 서울시 산하기관 간에 사용소요 조회를 통하여 서로 융통할 수 있는 폭을 넓히도록 사용소요 조회기준 가격을 상향조정 하고자 함

나. 주요 골자

-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 확대조정(안 제15조제3항)
 - 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2,000만원
- 매각시 감정대상물품(장부상 취득가)
 - 1,000만원 이상 물품 → 2,000만원 이상 물품

다. 물품관리규정 및 절차

- 물품의 정의 : 지방재정법 제90조
현금, 유가증권, 공유재산을 제외한 자치단체가 보유 사용하는 동산
- 물품관리기준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기관별 보유대상 물품종류, 정수책정, 사용기간 등 행자부지침으로 정함
- 물품의 취득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2조
물품수급 연간계획 책정→정수책정→예산책정→조달청 구매 원칙(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
- 물품의 처분



물품매각방법 및 가격

- 원칙적으로 공고 후 일반경쟁입찰

- 가격 책정
 - 2,000만원 이상은 감정가액
 - 2,000만원 이하는 장부가액에 의한 예정가로 하되
 - 낙찰가가 예정액의 1/2이하이면 새로운 가격으로 재입찰
 - 재입찰시 유찰시는 수의계약
 - 매각이 되지 않은 물품은 소정절차에 의거 폐기처분

라. 조문별 검토

조문별	내 용	검 토 내 용
제15조제3항	자구개정 : 직할시→광역시	'94. 12. 20 지방자치법 제2조 개정에서 직할시가 광역시로 자구수정되었음
제15조제3항 단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서울시 구역 안의 중앙행정기관, 직할시, 도에 대하여 실시하나, 불용품의 가격이 500만원 ~ 2,000만원 미만 물품은 서울시와 그 소속 사업소, 자치구에 대하여 조회한다.	소요조회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불용품의 활용이 증대될 것으로 사료됨
제16조	불용품의 매각시 2,000만원 이상의 물품만 감정대상	종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 이는 재물조사 기관의 건의사항 수렴 차원

마. 검토의견

○금번 개정안은 2000년 재물조사 결과의 심사분석에서 문제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물품 관리업무의 효율을 증대시킬 것으로 사료됨

4. 質 疑 및 答 辯 要 旨 : 없 음

5. 討 論 要 旨 : 없 음

6. 審 査 結 果 : 원안가결

7. 少数 意見의 要旨 : 없 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7.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審 查 報 告 書

2001. 2. 8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1. 審查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년 1월 22일 ·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1년 1월 29일
- 다. 상정일자 : 제108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2001. 2. 6) 재무건설위원회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동 연 호)

가.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행 감면대상을 재검토하여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여 오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장시행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2001년부터 자동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가 폐지되므로 관련 면허세 감면을 조례 폐지
-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 서민주택 지원의 취지에 맞도록 감면대상을 60㎡ 이하로 축소함(안 제8조)
-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안 제9조)
- 기타 감면규정은 현행 감면수준을 유지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시행함

다. 개정근거

-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 서울특별시 세정13415-1301호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장 소 수)

가. 개정 이유

- 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만료된 점과 자동차등록의 면허세 폐지를 규정한 법령 등과 같이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전문 개정임

나. 주요 골자

- 자동차 등록 면허세 감면규정 삭제
- 임대주택 감면대상 면적을 85㎡→60㎡ 축소 【50/100 감면 세율 3/1000】
-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감면 신설 【50/100 감면】
- 부칙규정 개정 2000. 12. 31 →2003. 12. 31까지 적용

다. 감면을 규정한 법규

< 지방세법 제9조 >

- ①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자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여야 한다.

< 행자부장관의 허가 근거 >

- 행자부 세제 13400~1943(2000.11.21)
- 구세감면조례 개정안 시달

라. 현행 지방세법상 비과세, 과세면제 및 감면 등의 규정 내용

< 법정 비과세 >

- 국가, 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조합, 주한외국기관
- 종교재단단체, 학교, 학교부속병원, 사회복지법인,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정당, 영유아시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광복회, 4·19부상자회, 충무무공수훈자회, 마을회관

< 법정 과세면제 및 감면 >

-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감면
 - 소규모 임대주택
 - 국가유공자
 - 노인정
 - 신문·통신법(사업소에 50/100)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감면
 - 법인 지방이전, 공장 이전, 산업단지
- 기술, 인력,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감면
- 공공법인 지원을 위한 감면
 - 적십자사, 대한가족계획협회, 대한결핵협회 등

< 조례에 의한 감면 >

종로구

계	재산세, 종토세 면제	재산세 면제	재산세, 종토세 (한시면제)	50% 경감	기타
18	6	2	2	5	3

- 재산세, 종합토지세 전액 면제
 - 중상이자 및 그 유족 재산
 - 종교단체 운영 의료법인 재산
 - 평생교육시설(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등)
 -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 지방공사 재산
 - 전직 대통령 주택
- 재산세 면제
 - 사립학교 실험실습용 항공기, 선박
 - 철거된 무허가건물(당해년도)
- 재산세, 종합토지세(5~7년간 면제)
 -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용 재산
 -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개선 주택
- 재산세, 종합토지세 50% 경감
 - 유료 노인복지시설
 - 임대주택(60㎡ 미만)
 - 아파트형 공장
 - 옥외광고물 정비자
 - 중소기업 구조개선 재개발 재산
- 기타
 - 역사문화 미관지구 내
 - 주택사업자 미분양주택
 - 도시계획으로 사권제한 토지

마. 금회 개정 또는 신설 규정

개정대상		내 용	검 토 내 용
조문	방법		
제2조	②,③항 삭제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보유차량에 대한 면허세 감면규정	2000.12.29 지방세법시행령 제124조 개정 시 자동차등록 면허세 폐지로 면허세 감면을 규정한 종전 조례 제5조의2, 제11조, 제11조의2의 조문 삭제
제6조	용어변경	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99.8.31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됨에 따른 용어 개정
제7조의2	용어변경	제4종미관지구→역사문화미관지구	2000.7.1 도시계획법시행령 전문 개정 때 4종미관지구가 역사문화지구로 바뀜
제8조	내용개정	임대주택 재산세 50% 감면면적개정 85㎡ →60㎡ 종토세 3/1000 세율적용면적 85㎡→60㎡	지방세법시행령 제223조는 주택공사 보유 임대주택 감면대상면적이 60㎡이므로 이와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함
제9조 제2항	신 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재산세 50/100 경감, 종토세 과표 50/100 경감(사치성 재산 제외)	2000년 국정감사 질문과 시·도의견 수렴 결과 11:5로 우세
제10조	적용법규 변경	도시계획법 제7조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2000.1.28 법 신설로 새로운 규정 적용
부칙 제2조		· 적용시한 개정 2000년12월31일→2003년12월31일 · 제18조의 경우는 2002년12월31일까지 적용	· 제18조는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으로 이는 2002년 월드컵 대비 시한부사업이므로 단서규정은 타당함

바. 관련법규

< 감면 임대주택 면적이 85㎡→60㎡ 감소 개정한 법적 근거 >

지방세법시행령 제223조(소규모 주택의 범위 등)

①법 제26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택용 부동산이라 함은 1가구당 건축면적이 60㎡ 이하의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 지방세법 제269조제1항 >

대한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100을 경감한다.

사. 검토의견

- 지방세법상의 비과세, 과세면제, 감면 등의 제도 허용으로 재정상 가장 많은 피해를 우리 구가 입고 있으므로 단기적으로는 조정교부금의 보상적 교부율 적용이 요구되며, 장기적으로는 비과세나 과세면제 등이 세법에서 축소되도록 법개정 등의 노력이 요구됨
- 금번 개정으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감면이 실시되므로 이로 인한 감세 규모나 대응책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4.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 정 병 환 위원, 오 금 남 위원, 홍 승 태 위원, 안 재 흥 위원,)

(답변자 : 재무국장 동 연 호, 세무1과장 조 조 익)

문) '99년 8월 31일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바뀌었는데 이제서야 개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 12. 31까지이므로 2001. 1. 1 이전에 사전적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나 전국적 공통사안이고, 2000. 12. 4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이 시달되어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이제서야 상정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이 조례(안) 제9조제2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50%가 경감되는 금액은 모두 얼마입니까?

답) 제9조제2항에 의거 경감되는 부분은 13만 9,800㎡정도 될 것이며 평균 공시지가를 ㎡당 35만원으로 한다면 감면되는 종합토지세는 7,300만원정도 추정되며, 재산세는 토지 이외의 지상에 있는 건물에 부과되기에 실지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개략적으로 추측하면 거의 1,000만원이 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우리 구는 현재 비과세 지역이 67%나 되고 이 조례(안)으로 비과세, 면제, 감면되는 범위가 늘어나 재정상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바, 감면되어 줄어드는 세수입만큼 시에 조정교부금을 요청할 의향은 없습니까?

답) 광고물관리법 개정과 면허세 폐지로 인한 세입감소분에 대하여 시에서 보충해준다는 언급이 있었으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감면에 따른 세입 보상은 아직 구체적 언급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방안을 강구하여 수입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5. 討 論 要 旨 : 없 음

6. 審 査 結 果 : 원안가결

7. 少數意見의 要旨 : 없 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8.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審 査 報 告 書

2001. 2. 8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1. 審査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년 1월 22일 ·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1년 1월 29일
- 다. 상정일자 : 제108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2001. 2. 6) 재무건설위원회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동 연 호)

가. 개정이유

-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공부 등 열람의 제한 조항 삭제(안 제4조)
- 각종 인허가·신고·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한 수수료는 청구사항을 변경하거나 또는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조항 삭제(안 제7조제2항)

다. 개정근거

- 2000년 제1차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2000. 9.28)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장 소 수)

가. 개정 배경

- 상위법의 근거 없이 일반 주민에게 규제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내용을 개정토록 대통령 소속 하의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가 있어 이를 개정코자 하는 안임

나. 주요 내용

- 공부 등 열람제한 규정(조례 제4조) 전문 삭제
- 수수료 반환제한 규정(조례 제7조제2항) 삭제

다. 규제개혁위원회 권고내용

- 통보일 : 2000년 9월 23일
- 내 용

규제 사무명	폐지 사유
조례 제4조(열람 제한) 별표에 열거한 공부, 도면, 대장 등의 열람은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도 지장이 없는 것에 한한다.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임
조례 제7조제2항(수수료 반환제한)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청구사항을 변경하거나 또는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상 동

라. 규제개혁위원회 설치근거 및 권능

- 설치근거 : 행정규제기본법('97.8.22 제정)에 의한 대통령 직속위원회
- 구 성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5인이상 20인이내 구성(법 제23조)
- 권 능 : 규제의 철회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대상기관은 처리결과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법 제14조)

마. 조문별 검토

조문별	내 용	검 토 의 건
제4조	열람제한 대상민원은 인감증명, 지방세과세 증명, 무허가건물확인, 공장등록증명, 거주에 관한 증명 등	제4조 열람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열람을 허용하는 것으로 귀착되지는 않음 즉 독립법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안별로 보호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삭제에 따른 문제점은 없음
제7조제2항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	본 규정은 일방적인 관우월적 규정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삭제는 타당함

바. 관련법규

< 열람제한을 규정한 법규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처리정보의 열람제한)

- ①정보보유기관의 장은 열람을 청구한 청구인으로 하여금 당해 처리정보를 열람하도록 하는 것이 당해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 기납수수료의 미반환규정을 금지한 법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제①항4호 자기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하는 행위

사. 검토의견

- 행정규제기본법의 기본정신인 규제법정주의 원칙에 의거 삭제하는 사안으로
- 삭제에 따른 행정의 혼란이나 주민의 불이익 등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4. 質 疑 및 答 辯 要 旨 : 없 음

5. 討 論 要 旨 : 없 음

6. 審 查 結 果 : 원안가결

7. 少 數 意 見 의 要 旨 : 없 음

8. 其 他 必 要 한 事 項 : 없 음

9. 서울특별시종로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審 查 報 告 書

2001. 2. 8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1. 審查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년 1월 22일 ·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1년 1월 29일
- 다. 상정일자 : 제108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2001. 2. 6) 재무건설위원회 상정 ·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하 철 승)

가. 개정이유

○2000년도 종로구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종로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 중 건축합의기간 및 토지건축물의 권리가액평가, 가격평가 절차, 국공유지의 연고권 등 가격평가 절차의 규정을 삭제 및 개정토록 심의 의결함으로써 동조례의 일부 조항을 삭제 및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상위법에 위임근거가 없는 조문 삭제
 - 건축합의기간 조항 삭제(제14조)
 - 토지건축물의 권리가액 평가 조항 삭제(제18조)
 - 가격평가절차 조항 삭제(제19조제2항)
- 상위법(도시재개발법)의 개정에 따른 일부 조항 개정
 - 국·공유지의 연고권 인정면적 완화개정(제17조제3항)
 - 가격평가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류 중 자체확인 가능한 토지대장, 가옥대장 삭제(제19조제1항제3호)

다. 개정근거

- 행정규제기본법제4조(규제법정주의), 제5조(규제의 원칙)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모델 적용지침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장 소 수)

가. 주요 내용

- 시조례 개정에 따른 개정(재개발사업조례시행규칙)
 - 국공유지 점유자 점유권 인정면적 확대(50평→60평) : 제17조제3항
-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에 의한 개정
 - 건축합의처리기간 설정규정 전문 삭제
 - 권리가액 평가방법규정 전문 삭제
 - 권리가액 평가시 절차규정 ①, ②항 중 ①항만 일부 개정

나. 개정을 가져온 주체별

<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사항 >

대 상 사 무 별	국무조정실 권고내용
①건축합의기간(조례 제14조) 수인이 공유로서 환지 또는 분양지를 지정받은 경우 건축합의기간은 시행기간 만료일 1년 전까지로 한다.	삭 제
②토지건축물의 권리가액 평가(조례 제18조) 관리처분계획을 평가식으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 토지 등의 가격 과 분양예정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은 영 제40조의 규정에 따라서 평가하여 결정한 가액에 의한다.	삭 제
③가격평가절차(조례 제19조제1항) 가격평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토지대장, 가옥대장,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일부 개정 (토지대장, 가옥대장 삭제)
④가격평가시 시 절차규정 준용(조례 제19조제2항)	삭 제

<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시행규칙 >

제19조제1항제1호 - '99년 10월 5일 개정

①재개발구역 안의 국공유지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 소유자(무허가 건물인 경우는 기존 무허가건축물)에게 우선 매각한다.

1. 점유건축물이 담장 등으로 경계가 구분되어 실제 사용하고 있는 면적으로 하되, 200㎡(60평)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규제개혁위원회 설치근거 및 권고사항의 권능

- 설치근거 : 행정규제기본법('97.8.22 제정) 【법 제23조】
- 소 속 : 대통령 직속위원회 【법 제23조】
- 기 능 : 규제정책과 규제개선에 대한 심의 조정 【법 제24조】

- 구 성 :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위원 중 대통령이 위촉
 위원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등 당연직과 대통령이 위촉한 자
- 권고사항 : 처리 후 결과 보고

라. 조문별 검토

개정조문	조문 내용	검토 내용
제14조 (전문삭제)	수인이 공유로서 환지 또는 분양지를 지정 받은 경우의 건축합의기간은 사업만료 1년 전까지로 한다.	이 규정은 현재와 같이 재개발 후 아파트 등을 건립하지 않고 각자 환지받은 땅에 개인건물을 건립할 때에 대비한 규정으로 상위법의 근거나 현실성이 없는 규정으로 삭제는 타당함
제17조 (일부개정)	환지처분시 국공유지 점유자의 점유면적 인정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	상위규정인 시 시행규칙이 '99년 10월 5일 종전 인정면적 50평을 60평으로 상향 개정한 바 있어 타당함
제18조 (전문삭제)	관리처분계획시 종전 토지와 분양예정토지의 가액평가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에 의한다는 규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40조에서 평가방법은 시·도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함
제19조제1항 제3호 (일부개정)	위의 제18조 감정평가 신청서에 첨부할 구비서류 중 구에서 자체 확인이 가능한 토지 대장, 가옥대장 첨부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	법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전문 삭제 대상임
제19조제2항 (삭제)	감정절차에 대하여 더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제1항, 제2항 모두 삭제 대상

마. 조례 제18조 개정이 위법인 관계규정

<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40조 >

- ①법 제34조제4항제3호에 규정된 사항 중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출 평균하여 산정한다.
- ②법 제34조제4항제3호에 규정된 사항 중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은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의견을 들어야 한다.

< 도시재개발법 제34조 >

-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시행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시설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관리처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3. 분양대상자별로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서와 가격

바. 검토의견

- 조례 제14조의 국공유지 점유면적의 인정범위 확대조치는 적법하며, 우리 구 실정에서는 바람직한 개정안으로 사료됨
- 조례 제19조제1항 일부 개정은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시의 조례로 정할 사항이므로 전문 삭제하는 수정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 박 종 식 위원, 정 병 환 위원)

(답변자 : 도시관리국장 하 철 승)

문) 국공유지 점유자 점유권 인정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집니까?

답) 그렇습니다.

5. 討 論 要 旨 : 없 음

6. 審 查 結 果 : 원안가결

7. 少數意見의 要旨 : 없 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10. 서울특별시종로구지하수조례(안)

審 査 報 告 書

2001. 2. 8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1. 審査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년 1월 22일 ·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1년 1월 29일
- 다. 상정일자 : 제108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2001. 2. 6) 재무건설위원회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오 중 석)

가. 제정이유

-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의 개정에 따라 일부 업무가 자치구청장에게 권한이양되었기에 우리 구 지하수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음(안 제3조)
-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신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함(안 제4조)
- 필요한 경우 지하수개발·이용기간을 정하여 허가함(안 제5조)
-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성·변경 또는 해제통보를 받은 경우 일반인에게 20일 이상 열람토록 함(안 제6조)
- 지하수보전구역내를 수시로 점검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함(안 제7조)
- 지하수관리자문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 6인에서 10인으로 함(안 제10조)
- 지하수개발·이용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안 제12조)
-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관측용으로 지하수 관측정을 설치 운영함(안 제13조)

다. 제정근거

- 지하수법
-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장 소 수)

가. 제정 이유

- 지하수법이 '99년 3월 31일자로 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99년 8월 6일자로 공포됨으로써 동법령에
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지하수관리자문위원회 구성
 -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해제
 - 주요 행위허가시 자문
 - 10인 이내(위원장 : 건설국장)
- 과태료 징수절차 규정
- 기타 법령 위임사항 규정

다. 제정된 지하수법의 요지

- 목 적 : 지하수의 개발이용과 효율적 보전관리
- 대 상 : 전 국토의 지하수
- 전국적인 지하수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행 : 건설교통부 장관
- 지하수 보전구역의 지정 및 행위제한 : 시·도지사
 - 보전구역 : 지하수 고갈, 지반침하, 하류수량 확보
 - 행위제한 : 폐수방류, 폐기물투기 등
-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 : 군수, 구청장
 - 허가대상 : 동력장치 이용 양수(우물, 약수터 제외)
 - 조건
 - ┌ 원상회복 의무부과(이행강제금 예치)
 - ├ 허가 전 지하수 영향평가, 허가 후 지하수 개발등록업체 시공
 - └ 정기 수질검사
- 지하수 영향평가 기관의 등록 취소 및 감독관리규정
- 지하수 개발 시공업체의 등록 요건 및 시공, 관리요령 규정
- 벌칙 및 과태료 규정

라. 본 조례개정과 관련된 하수도법 규정

허가시 지하수 영향평가실시를 의무화한 규정과 또 시공은 등록업체만 하도록 한 규정

< 지하수법 제7조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지하수 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심사하여 허가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 지하수법 제22조 >

- ①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자가 아니면 공사를 할 수 없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지하수 영향조사서 심의시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상위법 규정은 재량사항으로 하고 있다.

< 지하수법시행령 제9조제3항 >

③시장·군수는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법규

< 지하수법시행령 제40조 >

①지하수관리자문위원회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하여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지하수법시행령 제44조 >

①지하수 관련과태료 징수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마. 조문별 심사

조문	내 용	검 토 의 견
제1조 제2조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규정	일반적 사항
제3조	지하수의 조사범위 등을 규정	법 제5조에서 지하수의 조사를 건설부장관은 의무사항(기속)으로 하고 있으나, 구청장은 재량사항으로 하고 있어 본 조례도 조사를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음
제4조	허가신청시 제출하는 지하수 영향조사서심사를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의견을 듣도록)	령 제9조에서는 심사를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5조	지하수 개발허가시 지하수 고갈, 생태계 파괴, 농업용수 지장 등을 고려 개발·이용기간을 제한하여 허가토록 규정	문제점 없음

조문	내 용	검 토 의 건
제6조 제7조	지하수보전구역 지정이 시장으로부터 통보되었을 시 열람내용이나 열람방법 등을 규정	보전구역지정은 시장 권한사항으로 열람방법만 규정
제8조	수질검사는 환경부장관이 수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 검사를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구청장에게 통보케 되어 있으며 부적합시설은 정수처리 지시를 하거나 시설보완 및 필요조치 명령	령 제30조 근거사항임
제 9조 제10조 제11조	지하수관리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 6인이상 10인 이내 - 위원장 : 건설국장 - 위 원 : 의회의원, 구관계관, 전문가 - 심의사항 ·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 · 주요 행위허가 등	위원 수, 참여자는 조례에서 임의 결정 가능 사항
제12조	원상복구방법이나 시기, 감독공무원, 감독방법 등을 규정	문제점 없음
제13조	지하수의 수위 및 수질을 정기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지하수관측정 운영규정을 둠	문제점 없음
제14조	과태료 징수	령 제44조에서 과태료 징수방법을 조례에 규정토록 의무화하고 있음

바. 검토의견

- 지하수법시행령 제40조와 동시행령 제44조에서 지하수관리자문위원회 구성 운영과 과태료 징수절차를 당해 자치단체조례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핵심사안이며, 기타 사항은 상위법령과 시행규칙사항을 보완하거나 구체화한 내용으로 타당함
- 조례(안) 제4조에서 허가신청시 첨부되는 지하수 영향조사서의 심사를 지하수관리자문위원회 의견 청취를 반드시 들도록 한 규정은 령 제9조에서 들을 수 있다는 재량규정을 기속규정화 한 것으로 규제개혁 완화정책에 반하는 사안으로 재량규정화로 수정하는 안의 검토가 요구됨

4.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 정 병 환 위원, 안 재 흥 위원)

(답변자 : 건설교통국장 오 종 석)

문) '99.11.15 서울시지하수조례가 개정되었는데 이제서야 우리 구 지하수조례(안)을 상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지난해에 상정되었어야 하나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존의 지하수법이 있어 지하수 보존관리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문) 이 조례(안)에 지하수관리자문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4년으로 되어 있는데 각종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보통 2년인데, 장기간인 4년에 연임까지 가능하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서울시조례준칙(안)대로 한 것이며 위원 임기는 2년도 가능합니다.

문) 이 조례(안) 4조에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는 경우 지하수관리자문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한 것은 지하수법시행령 제9조제3항의 들을 수 있다는 재량규정을 기속규정화 한 것 아닙니까?

답) 조례(안) 4조에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융통성을 주었으며, 타구도 동일하게 시행하는 사안이므로 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문) 위원회의 구성에서 구의원은 몇 명 위촉할 예정입니까?

답) 위원회가 8~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면, 보통 다른 위원회가 2명 정도이므로 2명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5. 討 論 要 旨 : 없 음

6. 審 查 結 果 : 원안가결

7. 少數意見의 要旨 : 없 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11.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개정건의요구(안)

의안 번호	793
----------	-----

제출년월일 : 2001. 2. .

제출자 : 안재홍의원 외 5인

1. 주 문

○개발행위허가(중전: 형질변경행위허가) 규정인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할 것을 건의함

○제25조 본문 말미에 다음과 같은 단서규정 신설

“다만 중전의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하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 시행 준공되어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별표1 심의기준에 갈음할 수 있다.”

2. 건의이유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종로구 평창동 산 6-142 외 88필지는 서울특별시고시 제65호(1971.10.12)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 인가되었고, 1974년 1월 21일 본 사업이 적법하게 준공된 지역입니다.

○준공 당시에 단지내 도로,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과 일부 대지만 조성하였고 일부 토지는 구획만 확정된 원형상태에서 지목만 대지로 변경하면서 이 토지 등에 대하여는 향후 건축허가시 별도의 개발행위허가를 거치도록 조건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부당한 준공조건으로 지금까지도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98년 12건, '99년 8건, 2000년 11건 등 매년 10여 건씩이 중전 도시계획조례 규정에 따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허가 처리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개정 시 허가기준을 중전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방법 대신 별표 I 열거 규정으로 한정함으로써 경성규정화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상기와 같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의 시행 정황 등을 전혀 반영할 길이 없어 중전 규정에 의거 허가 가능 토지가 허가 불가능하게 되는 등 인접토지간에 형평성이 제기되는 점
과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의 허가원인자로서 기득권이나 처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경과규정이나 단서규정 등을 전혀 고려치 않아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도 반하는 처사라는 민원 제기에 적극적인 대항논리가 부족한 상황 등을 고려 주문과 같은 개정을 건의함

※ 참고 규정

1. 도시계획법 제46조(개발행위허가)
2.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25조(개발행위허가기준)
3.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및 절차 제1항 다호(별표)
4. 도시계획조례 제25조 개정(안)

○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표1]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하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 시행 준공되어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별표1]의 심의기준을 갈음할 수 있다.